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제11조의2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허가받은 작업장 외의 시설)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을 말한다.

제13조 중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수집한 식용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2.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제27조의 제목 “(위해평가의 대상 등)”을 “(위해성평가의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를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나목

· 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위해평가”를 각각 “위해성평가”로 한다.

별표 1 제목 중 “(제17조의3 관련)”을 “(제17조의2 관련)”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4 제2호라목1)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1) 및 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타목부터 허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법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2항제1호의4	300	400	500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2조(허가받은 작업장 외의 시설)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의 시설을 말한다.</u>
<u>제12조 (생 략)</u>	<u>제11조의2 (현행 제12조와 같음)</u>
<u>제13조(식용란의 검사) 법 제12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말한다.</u>	<u>제13조(식용란의 검사) -----</u> ----- ----- <u>다음 각 호의</u> ----- ----- ----- ----- ----- ----- ----.
<u><신 설></u>	<u>1.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수집한 식용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u>
<u><신 설></u>	<u>2.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직접 식용란을</u>

제27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의 대상·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해평가의 대상

가. ~ 라. (생 략)

2. (생 략)

3.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가. 위해평가는 축산물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의 인체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위해요소의 일일섭취허용량 등 인체노출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산출하는 노출 평가과정 및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노출 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을 거쳐 해당 축산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수집하여 판매하는 식용란수

집판매업 영업자

제27조(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①

---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
-----.

1. 위해성평가의 대상

가.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위해성평가-----

가. 위해성평가-----

-----.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나. 위해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한다. 다만, 위해평가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축산물 위생 관련 학회 또는 축산물 위생 관련 전문연구·검사기관에 위해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그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호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

나. 위해성평가-----
-----.
-- 위해성평가 -----

----- 위해성평가 -----

-----.

다. -----
----- 위해성평가 -----

----- 위해성평가 -----

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 또는 시험·분석 자료를 위원회의 <u>위해평가</u>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u>위해평가</u>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u>위해성평가</u>----- ---. ② <u>위해성평가</u>----- ----- ----- -----.
---	---